◉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-5호

「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

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「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23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·보완하고자 함. 아울러, 그간 소량 취급시설 제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종전의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과 연계된 시행규칙 규정수량 방식이 취급시설별 소량기준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(안 제2조제3항, 별표1)
- 나. 고시내 미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을 수치·정량화하고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시의 현 장 활용성을 제고함(안 별표1)
- 다. 개정된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별표1)
- 3.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nics.me.go.kr)의 자료실-법령정보 확인